

# 공익법인 QnA

찬솔루션 양동명 회계사

T : 010-3064-1658, E : [admin@chansolution.com](mailto:admin@chansolution.com)



## 출연재산이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 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모두 포함되나요?

---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으나, 후원금·기부금 등은 포함됩니다.(무상으로 제공되는 자산을 의미함.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출연재산이 아님)

---

## 출연재산에 공모지원금도 들어가나요?

---

해당 공모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출연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모지원금의 지급 주체 및 그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등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정기예금은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4월30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 종합 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

##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에서 누락된 기부금(후원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년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문화예술 전시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르면 기타사업이 아닌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이 반드시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타사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지출을 의미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고정자산등을(토지, 건물, 자동차) 공익목적사업에 이용하는것을 사용으로 봅니다.

---

##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사업만 가능한가요?

---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어도 공익목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발생한 이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 기부금으로 다른 공익법인에 자산을 구매해서 줄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

출연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금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아야함. )

---

## 출연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몇 % 이상 사용해야 하나요?

---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출연재산보고서상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에서 이자수익은 운영성과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운영성과표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작성하면 됩니다.(이자수익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사업수익에 표시해야 함. 사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을 표시하지아니함)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임차료, 세무 확인, 직원 인건비 등으로 경비  
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경비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공익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도 인정함)

##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 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
-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및 사용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에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시작일과 사용종료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용계획 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10억원을 '23.3.1. 출연받아 '24.2.28.까지 장학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사용시작일은 '23.3.1., 사용종료일은 '24.2.28.로 입력하면 됩니다. 단, 사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을 사용시작일로하여 3년이 되는 날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고,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을 사용시작일로, 다음 사업연도 12.31.을 사용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 시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 완료된 재산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 출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연받아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때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 사용명세서에 출연받은 재산 중 소액 기부금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1개 사업연도 중 개인별(법인 제외)로 50만원 미만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소액 출연재산을 합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 운용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 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있는 공익법인 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9. 2. 12.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식매입은 안됨)

---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수익용 자산)에 예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이기에,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

##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대신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해도 되나요?

---

공익법인의 사업자번호가 아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르나요?

운용소득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액과 차감액을 통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운용소득과 법인세법 소득금액은 다름개념임.)

### 30.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 1. 1. 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Q31. 출연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되나요?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합니다.

---

## **Q32. 운용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 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익목적사업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0% 미달사용분은 가산세 10%가 부과됨)

---

## Q33. 출연재산에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운용소득인가요?

---

이자 금액과 상관없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은 운용소득이며,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34.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이내 8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Q35. 운용소득인 이자수익 중 미수이자가 포함된 경우, 사용기준액(80%) 계산 시 미수이자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

미수이자를 제외(실제현금 이자수익이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포함)한 이자수익의 80%를 사용기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 Q36.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다수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개별 수혜자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내역은 대표 수혜자를 적고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합산작성임)

---

## Q37.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시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다수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개별 수혜자에게 100만원 미만으로 지출한 내역은 대표 수혜자를 적고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합산작성임)

---

## Q38. '이사 등 선임명세서'에 감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

감사도 임원에 해당하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기된 이사** 명세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취임, 해임 이력이 있는 이사와 임원도 작성하면 됩니다.

## Q39. 회비수익이란?

회비는 특정한 요건(회원)을 만족하는 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이며 납부에 따른 회원의 혜택이 있거나,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납부가 강제 됩니다. 그러나,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합니다.(회비수익은 출연재산에서 제외 하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출연재산으로 간주해야함)

---

## Q40.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으로 국가·지자체 보조금만 있는 경우, 결산서류 공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국가·지자체 출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는 없으나,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에는 해당합니다.(공익법인에 해당시 수입기준 판단에 들어가며, 공익법인에 해당되면 결산공시는 해야함)

---

## **Q41. 전년도 공시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공시 하지 않고 당해연도 공시할 때 전기금액만 수정해도 되나요?**

---

전기 공시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하여 재공시하여야 합니다.

---

## Q42.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 Q43. 간편서식 작성 대상 법인이 표준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

간편서식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Q44.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

## Q45. 결산서류 공시 서식에서 [1. 기본사항]의 ⑰고용직원 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⑰고용직원 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적으며, 이는 본지점을 포함한 전체 직원 수를 기준으로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사업연도 월 수”로 계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Q46.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 후, 기본순자산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

## Q47.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는 기부금으로 지출된 것만 작성하나요?

---

기부금을 재원으로 직접 지출된 금액을 작성하며, 보조금·운용소득 등에 대한 지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Q48.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전년도 미지급비용과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전년도 미지급액은 포함하고 당해연도 미지급액은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실제 지급된 금액이 기준임. 단, 카드사용분은 지출로 간주됨)

## Q49.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자산별로 작성합니다.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기간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시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지급처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직원 갑 외 2명에게 인건비 총 72백만원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 3명, 지출액 72백만원' 기재

---

## **Q50.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한 금액 외에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기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한 경우,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하고 회의비·인건비·지급수수료 등으로 지출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 Q51.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상 출연자는 후원자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

출연일 현재 총 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 Q52.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작성 시 ⑧ 직접공익목적사용 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작성하면 되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사업사용금액'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 Q53.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을 적용하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Q54. 현물인 기부물품을 받고 지출한 경우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운영성과표의 사업비용, 분배비용 계정에 해당하므로, 현물인 기부물품이 수혜자 등에게 지출된 경우 분배비용 계정에 기재하면 됩니다.

## Q55.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Q56.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 보조금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Q57. 공익법인등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Q58.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등 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설립자 또는 임직원
2. 출연자 등과 친족 등, 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와 소송대리, 회계감사,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가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 Q59.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확인 가능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서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세무대리인과 감사인도 세무확인이 가능함**

---

## **Q6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수행을 학교법인 별로 하지 않고 학교법인 소속 학교별로 해도 되나요?**

---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별 학교는 학교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학교법인 별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를 수행합니다.

## Q61.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직전년도 기준

- 1)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 2) 수입금액(출연재산이 포함되어 있음)이 50억원 이상
-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 제외대상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 Q62.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판단 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됨)

---

## Q63.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때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Q64.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Q65.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아래 1~5번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다만, 100만원을 초과시)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sup>65</sup>

---

## Q66.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도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관련 계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기부금 등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Q67. 전용계좌 신고는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관련 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수익사업 관련 계좌와 공익목적사업 전용계좌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에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 신고·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

## Q68. 정기예금 가입 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나요?

---

이자 수입 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익용 계좌는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예금이자는 전용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 Q69.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지정 절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익법인으로 지정 받지 않으면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부받은 단체는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교, 학교, 의료, 사회복지 법인**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

## **Q70.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5. 12. 31.인 공익법인은 재지정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지정기간 만료일이 '25.12.31.이면 '25.10.11.부터 '26.10.10.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매년 1, 4, 7, 10월의 10일까지**

## Q71.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요건은?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정관이 중요함)

- ㊸ 정관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 ㊸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 ㊸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중 1개 이상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 ④ 해당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⑤ 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Q72. 지정추천 신청 구비서류는?

- ①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 ② 법인설립허가서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비영리외국법인) 외국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서류
- ③ 정관
-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
-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 신규 신청 ①~⑥ / 재지정 신청 ①~⑤, ⑦
- ⑧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Q73.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종교법인 제외)와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가~라목)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유치원,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② 기획재정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법인령 §39①(1) 바목)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다만, '23년부터 기부금 수입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의무이행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Q74. 학교법인이 산하의 모든 학교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학교가 개별적으로 보고하거나 학교법인이 일괄보고할 수 있습니다.

---

## Q75.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미제출 또는 의무불이행시 불이익은?

---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 일반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합니다.

## Q76.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는?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 상속세 (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4.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5. 공익법인등이 해산한 경우

## Q77.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법적 증빙서류는 없으나 장부가액 및 시가가 확인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 Q78. 기획재정부 장관 일반기부금단체의 경우 분사무소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 등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등은 시설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판단함)

---

## Q79.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에게 종이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

기부금 단체는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선택하여 기부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Q80. 정기후원 방식으로 매달 기부받는 경우, 각각 발급해야 하나요?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일자별로 기부금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기부금영수증이 각각 발급됩니다.

다만, 연말에 한번 1년간의 기부내역에 대해 기부일자별로 입력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81.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중복해서 발급해도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의 중복공제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이미 교부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서류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이 신고한 기부금금액보다 기부자 신청한 기부금 공제총액이 큰 경우에는, 사유를 국세청에 소명해야 함)

---

## Q82. 익명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 기부분은 기부자 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Q83.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부자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 발급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여야 하고, 이후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기준으로 주민번호를관리하고 있음)